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박정현 · 부승찬
북기왕 · 박상혁 · 朴芝源
손명수 · 이정문 · 강준현
허 영 · 김주영 · 이주희
한민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표권 · 저작권 · 특허권 ·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,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,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 ·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

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).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3항 또는 제4항”을 “제3항부터 제5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까지”를 “제6항까지”로, “담보 제공”을 “담보 제공,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, 침해 여부의 확인·통보”로 한다.

- ⑤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·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부터 제6항까지”를 “제3항·제4항·제6항 및 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23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5조(지식재산권 등의 보호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35조(지식재산권 등의 보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 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 의 조사·단속 업무를 관장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 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 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 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 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</u>
⑤ <u>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</u>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 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	⑥ <u>제3항부터 제5항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한다. 다만,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, 담보 제공, 통관의 보류·허용 및 유치·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(생략)

제235조의2(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)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, 통관의 보류·허용 및 유치·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

----.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제6항까지-----

-----담보 제공, 통관 보류
나 유치의 요청, 침해 여부의
확인·통보-----
-----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235조의2(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) -----

-----제3
항·제4항·제6항 및 제7항---

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	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